



조진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가족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원

‘가족’과 함께 연상되는 단어를 들라면 ‘안정’이나 이와 유사한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또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가족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변화’일 수도 있다. 항상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가족에 대한 통념이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가족정책의 역할은 다양화되는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여 대처하고, 때론 기왕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가족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안정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이 글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을 변화와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사안 중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였다.

###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의 가치 확산

가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영역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런 이유로 가족정책은 오랫동안 가정복지라는 이름을 달고 복지의 영역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사회 인식의 발전에 따라 이 분야도 발전을 거듭하여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족정책은 복지의 영역을 벗어났고 2005년엔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국이 설치되는 것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기본법의 정신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및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sup>1)</sup>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본법의 정신은 전국 151개 지역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그리고 17개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합적,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을 전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특별한 정책수요가 발생한 가족유형에 대해 특화된 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전달체제인 지역의 센터들이 각각의 대상과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형이 위기가족과 탈북가족이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정책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센터들을 통합하여 (가칭) '가족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족센터의 설치는 근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작업이므로 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가족센터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법개정 후에도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가족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3개 유형의 센터기능을 통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예를 들었듯이 새로이 출현하는 가족형태와 정책수요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그리고 가족센터의 기능은 새로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가족센터의 보다 근본적인 기능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이 가족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다. 가족형성의 주기를 볼 때 첫 단계인 결혼을 전후하여 예비부부 교육과 예비부모교육을 시작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출가하고 은퇴 후 부부관계회복까지 가족센터에서 스스로 필요를 느끼는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생전반에서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라 가족원으로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족센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예방적 차원부터 문제해결까지 가족센터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자녀양육책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마련

지난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 공포되었다. 이행법률은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비양육한부모가 양육한부모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양육한부모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혼이 원인이겠지만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

1) 기본법 제2조 목적

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 이혼 시 비양육한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재판상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 청구 경험이 있는 이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대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은 '10년 26.2%, '13년 24.3%에 불과하였다.

비양육한부모가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한부모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을 통하여 친자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 신청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을 전액 무료 지원하고 있으나, 양육비 월 지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행법률은 양육비 이행조서를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이행 소송을 대리해주는 한편 이행에 대한 집행도 대리해 줄 수 있게 된다.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하 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행관리원은 양육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 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

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하여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이행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강제 이행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양육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이행법률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행법률을 통해 그동안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한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행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추진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급격히 증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 국가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왔다. 다문화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14.1.15.)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중복조정과 개선, 둘째, 다문화정책의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셋째,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족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 등이다.

다문화정책 중 중복이 심하다고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사업은 한국어교육이다. 개선방안은 이런 한국어 교육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제공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할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만이 아니므로 기초지자체단위로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수요란 교육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장소 등이 모두 포함된 고려이다.

한편 결혼이민의 연차가 더해 갈수록 결혼이민자가 속한 가족구성원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정체성의 위기

를 맞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이 양국의 장점을 이어받은 다문화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모국어로서 한국어뿐 아니라 결혼이민 부모로부터 그들의 모국어를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의 둘째 분야는 다문화와 관련된 부처들,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협업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셋째분야는 앞서 가족자치 확산에서 설명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는 여타의 가족들과 다르지 않게 자녀의 양육과 교육 중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과 부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경제 활동과 관련한 문제들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여성가족부만 대처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센터는 다양한 해결방안들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복합**